

기술표준원공고 제 2003 - 56호

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03. 4. 10.

기술표준원장

## 전기용품안전기준운용요령 개정 주요내용

### 1. 개정취지

국제기준(IEC)과 부합화한 전기용품안전기준(K 기준)과 한국산업규격(KS C IEC)의 용어 등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전기용품안전기준운용요령을 개정코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전기용품안전기준운용요령 제2조 [별표 1] 내지 [별표 3]을 다음과 같이 개정.

- [별표 1] 강제적용 안전기준
  - 개별 안전기준에 참조규격(IEC 및 KS C IEC)을 명기
  - KS C IEC가 명기된 K 60081 등 59개 안전기준을 한국산업규격과 부합화(용어 통일 및 지구 수정)
- [별표 2] 참고적용 안전기준
  - 개별 안전기준에 참조규격(IEC 및 KS C IEC)을 명기
  - KS C IEC가 명기된 K 60027-1 등 118개 안전기준을 한국산업규격과 부합화(용어 통일 및 지구 수정)

○ [별표 3] 전자파적합성 안전기준

- 개별 안전기준에 참조기준(IEC 및 KS C IEC)을 명기
- KS C IEC가 명기된 K 60000-6-1 등 4개 안전기준을 한국산업규격과 부합화(용어 통일 및 지구 수정)

※ 개별 안전기준 내역 : 붙임 참조

\* 안전기준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([www.ats.go.kr](http://www.ats.go.kr))를 참고하시거나 제품 안전과에서 열람

○ 부칙

-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
- (시험항목 추가 등에 대한 경과조치) 이 고시의 개정 내용 중 시험항목이 추가되거나 기준이 상향 조정된 항목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에 적용한다.

3. 의견제출

상기 개정코져 하는 붙임 개정목록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,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가. 제출기한 : 2003. 4. 30

나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반여부와 그 사유)

다.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(주소 및 전화번호)

라. 단체인 경우(단체명, 대표자명, 주소, 전화번호)

※ 기술표준원 연락처

- 주소 :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
- 전화번호 : 02-507- 7434(FAX 02-507-6875)